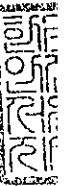


자가용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



KE/CO 한국전기안전공사
KOREA ELECTRICAL SAFETY CORPORATION

자가용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

재)서울디지털재단 (개포디지털혁신파크) (이하 "갑"이라 칭한다)와 한국전기안전공사(이하 "을"이라 칭한다)는 갑의 자가용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계약 체결의 증표로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 날인하고, 갑, 을이 1통씩 보관한다.

계 약 번 호	2115-39101		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	104-83-00469		
전기설비 설치장소	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6-0					
전 기 설 비 용 량	수용설비	수전전압	22,900 V	용량	500 kW	계약 전력 합계 535.28 kW
	발전설비	비상용 전압	V	용량	kW	
		태양광 전압	380 V	용량	35.28 kW	
		연료전지 전압	V	용량	kW	
책 임 분 계 점	한전 재산 한계점					
월 정 수 수 료	월액 379,300 원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납부한다. 단, 계약기간 중 수수료 변경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수리 수수료에 의하며, 수수료변경 적용일로부터 변경된 수수료를 적용한다.					
연 락 책 임 자	직책				성명	
계약유효일자 및 계약 기간	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서기 2018년 11월 1일부터 서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 위 기간 만료일(갑)을 어느 측에서도 서면에 따른 이의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1년간 그 효력이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도 이 예에 따른다. 계약의 효력은 유효일자부터 발생하고 갑은 이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고 계약을 체결한다.					
기 타 사 항	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첨 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며 갑의 설치장소, 설비용량, 명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을 경신하여야 한다.					

첨부 : 계약일반조건 1부.

체결일자 2018년 월 일

위탁자(갑)

주 소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3 8층
 상 호 재)서울디지털재단
 대표자성명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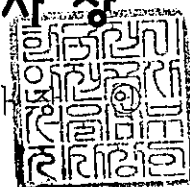


수탁자(을)

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20 (역삼동833-2)

한국전기안전공사 사 장

위 대리인 서울남부지사



계 약 일 반 조 건

제1조(통지의무) 갑은 다음의 경우에 그 구체적 내용을 을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① 전기사고, 기타 전기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.
- ②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계획하거나 시공 또는 완성한 경우.
- ③ 사고, 기타 이상시에 운전조작을 행한 경우.
- ④ 상속 등에 따라 계약에 대한 권리, 의무가 승계되거나 업종, 대표자, 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의 주소, 전기시설물 설치장소가 변경될 경우.

제2조(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) 을이 수탁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지할 수 있다.

- ①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태로 사실상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.
- ② 갑의 사업장의 접근이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불가능하거나 심히 어려운 경우.
- ③ 갑의 사업장이 일시 폐쇄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을의 수탁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.

제3조(손해배상의 면책) 을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- ① 계약사항 및 을이 통지 또는 조언한 사항에 대하여 갑이 그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
- ② 갑이 법령을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- ③ 계약일반조건 제1조의 통지의무 이행을 지체 또는 태만히 하였을 경우.
- ④ 계약일반조건 제2조에 따른 사유 또는 을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실사가 일시 정지 되었을 경우.

제4조(손해배상의 범위) 을의 과실로 갑이 입은 손해의 배상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을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중과실로 갑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상손해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.
- ②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가 발생한 당해년도 연간 수수료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

제5조(계약의 해지)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.

- ① 갑 또는 을로부터 해지요청이 있을 경우.
- ② 갑으로부터 점검거부 또는 사업장내의 출입 제한으로 을이 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거나 심히 어려운 경우
- ③ 2개월이상 수수료의 체납으로 을이 갑에게 납부통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

제6조(계약의 해지방법) ①갑이 제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뜻을 기재한 문서를 을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을이 갑의 해지의사를 수락하는 문서를 발송하면 그 날을 기준으로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.

②을은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문서로 갑에게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문서를 발송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을 해지한다.

제7조(연락책임자) ①갑은 전기설비 유지 및 운용과 이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을과의 연락을 취할 연락책임자를 정하고 그 성명 연락방법 등을 을에게 통지한다.

②갑은 연락책임자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업무를 대행할 대리자를 지체없이 정하고 즉시 그 성명 연락방법 등을 을에게 통지한다.

③갑은 연락책임자 또는 그 대리자로 하여금 을이 시행하는 안전관리업무에 입회하도록 한다.

제8조(수수료 납부) ①갑은 계약체결 시 계약유효 당월분 수수료와 그 후 월정 수수료를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②수수료 납부는 지로청구서, 자동이체, 신용카드, 온라인입금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.

③매월 16일 이후 신규 계약체결 고객의 유효일자를 당월에 적용하였으나, 법정 점검횟수 만큼 점검을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월정수수료의 2을 적용한다.

④계약해지일에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였으면 매월 말 법정 점검횟수에도 불구하고 월정 수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⑤갑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실시일에 납부할 월정 수수료는 면제한다.

제9조(기타) ①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을의 업무규정에 따른다.

②갑이 을의 업무규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을의 업무규정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